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83호 2017. 3. 15.(수)

| | |
|--------|-------|
| 선 결 | 기관의 장 |
| | |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19호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3
 거창군 규칙 제1220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5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07호 거창군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18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3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협조 24
 거창군 고시 제2017-31호 삼봉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26

| |
|-----|
| 공 고 |
|-----|

거창군 공고 제2017-342호 2017년 거창군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28

거창군 공고 제2017-343호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2

거창군 공고 제2017-347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0

거창군 공고 제2017-348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6

거창군 공고 제2017-354호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0

거창군 공고 제2017-355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8

거창군 공고 제2017-365호 도로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94

거창군 공고 제2017-372호 거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소하천구역·지구지정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99

거창군 공고 제2017-379호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01

거창군 공고 제2017-380호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07

거창군 공고 제2017-381호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3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등 인

2017년 3월 15일

거창군 규칙 제1219호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보건소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 |
|----------|--------|
| 의안 번호 | 2017~8 |
|----------|--------|

| | |
|-------|-------------|
| 제출연월일 | 2017. 3. 7. |
| 제 출 자 | 행정과장 |

1. 개정이유

「약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염병관리담당을 신설하는 등 규칙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위업무 수정함(안 별표 2)

- 감염병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단위업무 수정

나. 단위업무 삭제함(안 별표 2)

- “독극약 및 독극물 관계 지도단속” 사무명 삭제

※ 「약사법」 개정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2. 14.~3. 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없음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3월 15일

거창군 규칙 제1220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거창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관련 자문
2. 투자기업의 발굴
3.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의 수집·제공

③ 자문관은 투자유치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대학교수
3.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3. 그 밖에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중 “남/녀”란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신 설></p> | <p>제23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거창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② 자문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유치관련 자문 2. 투자기업의 발굴 3.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의 수집·제공 <p>③ 자문관은 투자유치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대학교수 3.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④ 군수는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3. 그 밖에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 |

【별지 제7호서식】

| 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금 신청서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표자 | | 생년월일 | (남/여) | |
| |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 | 전화 | | |
| | | | F A X | | |
| 기존 소재지 | | | | | |
| 공장 이전지 | | | | | |
| 공장설립(준공일) | | | | 업종(분류번호) | () |
| 공장증설 투자내역 | 과 목 | |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 | |
| | 합 계 | | 투자계획 | 비고 | |
| | 토지 매입비 | | | | |
| | 건축비 | | | | |
| | 시설 설치비 | 기계장치 | | | |
| | | 부속설비 | | | |
| 보조금 신청 | 건축공사 착수 | | 백만원 | | |
| | 공장등록(완료) | 총 지원금액 | | 백만원 | |
| | | 기 지원금액 | | 백만원 | |
| | | 금회 신청 금액 | | 백만원 | |
| <p>「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증설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 | | | | |
| 거창군수 귀하 | | | | | |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1부 3. 건축비, 시설설치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건축 공정을 확인서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 | 1.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공장등록증 1부 | | 수수료 없음 |
|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 | | | | |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 | | | | |
|---|-------------------|------------|--------------|----------|
| 외국투자가 | 상호 또는 명칭 | | 국적 | |
| 외국인투자기업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외국인 투자내용 | 신고일 | | | |
| | 신고된 사업 | | | |
| |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 | | |
| | | 금 | 원(USD | 상당), 퍼센트 |
| 투자방법 | 현금 | 자본채 | 산업재산권등 | |
| 구분 | 신규 | 증자 | 사업개시예정일 | |
| 설립(이전)일자 | 년 | 월 | 일 | 공장등록일자 |
| | | 년 | 월 | 일 |
| 소재지 | | | | |
| 업종(주생산품) | | | | |
| 상시고용인원 | 교육훈련 대상인원 | | 교육훈련 제외인원 | |
| | (남/여) | (남/여) | (남/여) | |
| 교육훈련기관 | | 교육훈련비지급액 | | |
| 보조금신청액 | | 만원(USD 상당) | | |
| <p>「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p> | | | | |
| 거창군수 귀하 | | | | |
| 구비서류 | | | | 수수료 |
| 1.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 | | | | 없음 |
|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 | | | |
|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조금 신청업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 | | |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 |
|----------|---------|
| 의안 번호 | 2017~10 |
|----------|---------|

| | |
|-------|-------------|
| 제출일자 | 2017. 3. 6. |
| 제 출 자 | 기업지원과장 |

1. 제안이유

투자유치관련 자문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하고 그 자격기준 및 수당범위 등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규정 신설(안 제23조)

○ 자격, 기능, 수당범위를 정함

나. 성별 구분항목 신설(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제9호제10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

나. 예산조치: 예산 600만원 2017년 추경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1. 23.~2.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란 추가)

(6) 도내 규칙 개정완료(7): 거제시, 밀양시, 창원시, 통영시,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3월 15일

거창군 훈령 제407호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예방의약”을 “의약, 감염병관리”로 한다.

별표 중 보건소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구성) ② 직속기관에 두는 담당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보건소에 보건행정, 건강증진, <u>예방</u> <u>의약</u>, 건강지원, 보건민원담당을 둔다.</p> <p>② ~ ④ (생략)</p> | <p>제3조(구성) 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의약</u>, <u>감염병관리</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실과 | 사무분장 | 분 장 사 무 |
|-----|----------------|---|
| 보건소 | 예방의약 | 27.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 28. 무허가, 부정의약업자 단속 및 처리 29.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설등록(안경업소, 치과기공소등) 30. 진단용 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업무 31. 의료기기 판매·수리업 관리 32. 군립노인요양병원 관리 33. 365 안심병동사업 34. 헌혈 및 장기기증 관련 업무 35. 심폐소생술 관련 업무 36. 화장품 관련 업무 |
| | 감염병관리 <신 설> | 37. 감염병예방 및 관리 업무 38. 신종감염병 관리 업무 39.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사업 40. 성병·에이즈 예방 및 관리 41.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 42. 한센인 관리사업 43. 방역소독사업 및 방역대책 수립 44. 의무소독대상시설 관리 및 점검 45. 소독업체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 46. 기생충·위생해충 예방 및 퇴치사업 47. 각종 질환 등에 대한 진단검사 업무 48. 생물테러 업무 49.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
| | 건강지원 | 50. 치매관리 및 예방사업 51. 치매 의료비 및 검진비 지원사업 52.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 위생용품 지원사업 53.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GPS) 지원사업 54.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상담실 운영 55. 지역사회 건강조사 관련 사업 56. 만성질환 관리사업 57.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58. 노인 실명 예방관리사업 59.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60.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사업 61. 어르신 인공관절 지원사업 62.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63.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64. 소아암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5.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 |
|----------|--------|
| 의안 번호 | 2017~9 |
|----------|--------|

| | |
|-------|-------------|
| 제출연월일 | 2017. 3. 7. |
| 제 출 자 | 행정과장 |

1. 제안이유

의약·감염병관리업무 전문화를 위하여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을 신설함에 따라 담당별 세부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당 신설(안 제3조제2항제2호, 별표)

- 감염병관리 담당 신설

나. 담당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별표)

- 예방의약 ⇒ 의약

다. 담당별 세부분장사무 변경·조정(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없음
- (3) 입법예고: 해당없음
- (4) 도내 개정현황

- 완료(10): 창원,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양, 합천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3. 15.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79-7 외 4건(부여 4건 변경1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 비고 |
|-----------|-------|--------|-----------------|----|
| (별 도 열 람)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 일련 번호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고 시 일 |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 | | 도로명 | 도로명주소 | | |
| 1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45-2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79-7 | 2009-04-01 | 2017-03-15 | 자연마을인 죽전마을을 통과하 여 분기되는 네번째 도로임을 반영 | |
| 2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272-3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 17 | 2009-12-28 | 2017-03-15 | 1994년 거창읍시가지 간선도 로명 결정에서 유래 | |
| 3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163-1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길 81 | 2009-04-01 | 2017-03-15 | 행정구역명 정장리를 반영한 도로 | |
| 4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1030-1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보해길 508 | 2009-04-01 | 2017-03-15 | 보해산이라는 산이름이 반영된 도로 | |

○ 도로명주소 변경

| 일련 번호 | 종전주소 | 변경 후 주소 | 고 시 일 |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 | | 도로명 | 도로명주소 | | |
| 1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73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79-3 | 2009-04-01 | 2017-03-15 | 자연마을인 죽전마을을 통과하 여 분기되는 네번째 도로임을 반영 | |

거창군 고시 제2017-31호

삼봉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2012년 착수한 삼봉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수립(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삼봉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2. 사업의 목적 : 삼봉산권역의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조성 등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삼봉산권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3. 면 적 : 2,290ha (농경지: 1,152ha, 기타: 1,138ha)
4. 가구 / 인구 : 293호(농가: 244호, 비농가: 49호), 인구 649명
5. 사 업 비 : 5,684백만원(국비 3,978백만원, 지방비 1,706백만원)
(자부담 - 당초 : 398백만원 / **변경 : 363백만원**)
6. 사 업 기 간 : 당초 : 2012년 1월 ~ 2016년 12월
변경 : 2012년 1월 ~ 2017년 6월
7. 시 행 자 : 거창군 (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8. 사업개요(**변경**)
 - 기초생활기반확충(다목적센터, 원기마을 도로정비, 용초마을 리모델링 외)
 - 다목적회관 진·출입로 설치 및 내부시설 변경(사용목적 변경)
 - 지역경관개선사업(원봉계마을 안길정비, 수목식재 및 산책로 정비)
 - 주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석쌓기 및 스틸그레이팅 연장 설치
 - 소득사업(사과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 우수배수로 보강, 소득시설(소득법인 및 추진위원회) 요구사항 반영
9.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 농촌개발담당
(☎940-8257)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붙임 : 수용 · 사용 할 토지 세목조서 1부. 끝.

○ 수용 ·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순번 | 군 | 면 | 리 | 지 번 | 지목 | 지적 (㎡) | 공부상 소유자 | |
|----|----|----|----|--------|----|-----------|--------------------|--------------------------|
| | | | | | | | 주 소 | 성 명 |
| 1 | 거창 | 고제 | 봉계 | 86 | 답 | 83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거창군 |
| 2 | 거창 | 고제 | 봉계 | 87 | 답 | 1,084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거창군 |
| 3 | 거창 | 고제 | 봉계 | 89 | 답 | 2,314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거창군 |
| 4 | 거창 | 고제 | 봉계 | 85-1 | 답 | 2,471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거창군 |
| 5 | 거창 | 고제 | 봉계 | 90-2 | 답 | 24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거창군 |
| 6 | 거창 | 고제 | 봉계 | 90-7 | 답 | 538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거창군 |
| 7 | 거창 | 고제 | 봉계 | 1465-2 | 전 | 272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거창군 |
| 8 | 거창 | 고제 | 봉계 | 88 | 답 | 182 | 장기리 | 미등기 (토지대장 소유자 김호환) |
| 총계 | | | | | | 6,968 | | |

『2017년 거창군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시공)업체 모집 공고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7년 거창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9일

거 창 군  수

1. 사업현황

- 가. 지원대상 : 거창지역 공동주택 거주자
- 나. 사 업 량 : 180가구 정도
- 다. 지원시설 : 가구별 미니 태양광 250W이하 1세트
- 라. 지원금액 : 용량별 설치비 단가의 80%범위 내외

2. 신청 자격

- 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태양광) 참여기업으로
본사 또는 지사(영업소 및 대리점 제외)가 경상도내에 등록된 기업으로
우리군 보급제품 설치기준 이상으로 충족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한 기업
※ 최근 3년간 지자체 미니 태양광 참여 실적이 있는 업체 우대

나. 보급제품 설치 기준

| 설치구분 | 설 비 기 준 |
|-----------|--|
| 태양광 모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팍트 층 사이 설치가능한 제품(베란다조망권 보장) ○태양광 모듈의 발전효율이 15%이상인 제품 ○각 모듈은 분리설치가 가능하여야 함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 또는 공인성능검사 인증제품일 것 ○모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가입 제품 |
| 마이크로 인버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0W이하 계통연계형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일 것 ○인버터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가입 제품 |
| 모니터링 장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용 전력량계로 전기용품안전 인증 제품 ○전력량측정기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가입 제품 |
| 모듈거치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안전진단결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 ○난간거치형의 경우 내풍압(정압/부압) 시험 성능검사 적합(35m/s이상) ○완성작업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가입 |
| 전용 콘센트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란다 또는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 높이 1.5m이상 확보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 커버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 단, 적정장소에 안전이 확보된 기존 콘센트를 활용할 수 있음 |
| 기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골구조물(거치대 철판부위와 체결용 볼트, 너트,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은 스테인레스 자재 또는 녹방지처리 자재 ○태양광은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책임지며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에 규정한 기준을 충족한 제품일 것 |

3.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3. 10. ~ 2017. 3. 31까지(22일간)

※ 접수시간 : 09:00~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제출서류 :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참여(시공)업체 신청서(별지 제1호)

※ 제출서류는 A4 용지 책자 편철 7부 제출(선정 심사용)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라. 접 수 처 : 거창군 경제교통과(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4. 선정 방법

가. 제출서류(별지 제1호 서식) 검토 후 심사 선정(2개 기업 이내)

나. 심사발표 : 개별통지 또는 우리군 홈페이지 게재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업체 선정을 받은 경우 무효로 함

나.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참여(시공)업체는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하며,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책임보험가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참여(시공)업체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완료후 사업성과보고서(주요성과, 문제점분석, 절감효과, 모니터링 진행사항, 개선방안 등)를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사항

- 1)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정보는 신청자(군민)에게 공개될 예정임
- 2) 우리군 사정에 의해 지원시기와 사업량,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055-940-3712)으로 문의 바람

붙임 : 거창군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참여(시공)업체 신청서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2.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함(안 제4조)
- 나. 군수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어 삭제함(안 제6조)
- 다. 관리자가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관리자의 권한을 제한함으로 삭제함(안 제8조)
- 라. 수입증가분을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금 마련 지출에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삭제함(안 15조)
- 마. 잉여금의 처분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위배 소지가 있어 삭제함(안 제16조제3호)

바. 용어 정비 및 순화

○ 상수도사업 ⇒ 수도사업

○ 기타 ⇒ 그 밖에, 당해 ⇒ 해당,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 각호 ⇒ 각 호

4.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17. 3. 10. ~ 3. 30.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우)5012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수도사업소 【fax 940-8409, 이메일:kalbalism@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인터넷,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http://www.geochang.go.kr>)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41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7~ |
|----------|-------|

| | |
|-------|------------|
| 제출연월일 | 2017. 3. . |
| 제 출 자 | 수도사업소장 |

1. 제안이유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함(안 제4조)
- 나. 군수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어 삭제함(안 제6조)
- 다. 관리자가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관리자의 권한을 제한함으로 삭제함(안 제8조)
- 라. 수입증가분을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금 마련 지출에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삭제함(안 15조)
- 마. 잉여금의 처분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위배 소지가 있어 삭제함(안 제16조제3호)
- 바. 용어 정비 및 순화
 - 상수도사업 ⇒ 수도사업
 - 기타 ⇒ 그 밖에, 당해 ⇒ 해당,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 각호 ⇒ 각 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조제2항, 제11조, 제27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분석의뢰 후 결과반영여부 기술바랍니다.

(여성아동담당과 협의)

(6) 도내 개정 현황

○ 개정완료(5): 거제, 진주, 통영, 밀양, 양산(일부 조문 개정완료)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목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를 “거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제3조, 제6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본문,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 중 “상수도사업”을 “수도사업”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부대되는”을 “부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이에”를 “그 밖에 이와”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제목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군의”를 “거창군”으로 “한다)가”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를 “할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하는”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을 “사업을 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처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명의로”를 “이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을 “이름”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제2호”로 한다.

제18조 제목 “(처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계리상황”을 “회계처리 상황”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 보고인 경우에는”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으로 “한 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 유 |
|---|---|--|
| <p>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p> <p>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u>상수도사업</u>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p> <p>제7조(관리자의 책임) <u>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u>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u>법 제11조에 의한</u>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u>상수도사업</u>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u>상수도사업</u>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 <u>상수도사업특별회계</u> (이하 “<u>상수도사업 특별회계</u>”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u>상수도사업</u>,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u>상수도사업 특별회계</u>로 통합한다.</p> | <p>-----</p> <p>제6조(인사) -----<u>수도사업</u>-----</p> <p>-----</p> <p><삭 제></p> <p>제7조(관리자의 책임) 「<u>지방공기업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p> <p>-----</p> <p><삭 제></p> <p>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u>수도사업</u>----- -----<u>에 따라</u> <u>수도사업</u>----- -----<u>수도사업</u>----- -----<u>수도사업</u>-----</p> <p>② <u>수도사업</u>-----<u>그 밖에</u>----- -----<u>수도사업</u>-----</p> | <p>○군수의 인사권 침해소지가 있어 삭제</p> <p>○약칭 표현 및 용어순화</p> <p>○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때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은 상위법 위반으로 삭제</p> <p>○용어정비 및 순화</p> |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 유 |
|---|--|--|
| <p>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p> | <p>-----이름----- -----이름-----</p> | |
| <p>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p> <p>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p> <p>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p> | <p><삭 제></p> | <p>○수입금마련 지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 삭제</p> |
| <p>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p> <p>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p> <p>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p> <p>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p> <p>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p> | <p>제16조(잉여금의 처분) -----</p> <p>-----</p> <p>1.-----따른-----</p> <p>2.-----</p> <p>-----</p> <p><삭 제></p> <p>4.-----제1호·제2호-----</p> <p>-----</p> <p>-----</p> <p>-----</p> | <p>○「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으로 법령 위배소지가 있어 삭제</p> |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 유 |
|--|--|------------------------------------|
| <p>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생략)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u>상수도사업</u>의 관리자로 한다.</p> | <p>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u>수도사업</u>----- -----</p> | <p>○용어정비</p> |
| <p>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u>상수도사업</u>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u>각호</u>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용재원 명세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u>의한</u> 원가계산서 예산집행 보고서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u>기타</u> 필요한 사항 | <p>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에 따라 -----<u>수도사업-회계처리 상황</u>----- -----<u>각 호</u>----- ---- 1.----- 2.-----<u>따른</u>----- 3.----- 4.----- 5. <u>그 밖에</u>-----</p> | <p>○용어정비 및 순화</p> |
| <p>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 <u>각호</u>에 게시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현황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u>한한다</u>.) | <p>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 ----- ----- ----- -----<u>각 호</u>----- ----- ---- 1.----- 2.-----<u>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u> <u>업무상황은</u>-----<u>한정 한다</u>)</p> | <p>○용어순화 ○문장정비 및 용어순화</p> |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 유 |
|---|--|-------------------|
| <p>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u>상수도 사업</u>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생략)</p> <p>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u>상수도사업</u>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3. -----<u>수도</u> <u>사업</u>----- ----- 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u>에 따라</u>-----<u>수도사업</u>----- ----- -----</p> | <p>○용어순화 및 정비</p> |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6.6.16.] [법률 제13568호, 2015.12.15., 일부개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③ (생략)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제11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시산표(試算表), 자금운용보고서 및 해당 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8호, 2016.1.2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14. (생략)
15. 삭제 <2010.5.25.>
16. 삭제 <2010.6.8.>
17. (생략)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21.~ 32. (생략)

□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 전문

거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거창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거창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삭제>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관련 경비는 거창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을 할 경우
-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하는 재정 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이름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이름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 제>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 제>
4.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계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

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지역 주간지 등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2. 제안이유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만 받으면 점용행위가 가능하므로,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에서는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삭제(안 제6조)

4.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17. 3. 10. ~ 3. 30.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우)5012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수도사업소 【fax 940-8409, 이메일:gss1966@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인터넷,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http://www.geochang.go.kr>)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055)940-843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7- |
|----------|-------|

| | |
|-------|------------|
| 제출연월일 | 2017. 3. . |
| 제 출 자 | 수도사업소장 |

1. 제안이유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공 하수도관리청의 허가만 받으면 점용행위가 가능하므로,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에서는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삭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24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1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3. 10. ~ 3. 30.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 거제시, 양산시,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 유 |
|---|--|---|
| <p>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 <p>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삭 제></p> | <p>○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만 받아야 할 뿐인데,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거창군 하수도사용 조례에서는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p>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관련 조문을 「하수도법」에 맞추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확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수도사업소장 장 시 방

관계법령 발췌

□ 하수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88호, 2016.1.27, 일부개정】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제19조(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점용의 목적
3. 점용 기간, 장소 및 면적
4. 공사기간
5. 공공하수도의 복구 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개정 전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미터 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6.)

제3조 삭제(2015.9.23.)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또는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또는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2012.10.16.)

제8조 삭제 (2012.10.16.)

제9조 삭제 (2012.10.16.)

제10조 삭제 (2012.10.16.)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 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개정 2015.9.23.)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 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광경(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5.9.23.)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공공하수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함께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일시 사용 신고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한 후,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2.17.)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개정 2015.9.23.)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개정 2012.10.16. 2015.9.23.)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손상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10.16.)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2016.2.17.)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개정 2015.9.23.)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

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4에 따름(개정 2012.10.16.)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개정 2012.10.16.)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때 부과한다.

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물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이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호 전문개정 2012.10.1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전까지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군수의 분뇨 수집·운반 등에 관한 조치명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③ 대행업자는 분뇨 수거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24시간 내 수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요청인에게 설명하고 최대한 빨리 수거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에 따름(개정 2012.10.16.)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음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 수수료는 그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 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대행자 등이 제출한 반입서에 근거하여 그 물량을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가 분뇨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납부한 분뇨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⑥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된 분뇨 처리 수수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포탈된 금액에 「지방세기본법」이 정하는 가산금을 추가한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0.16.)

제2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시설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제26조(감면)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16.2.17.)

제27조 (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해당 납기 월액의 1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은 상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121조부터 126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2.10.16.)

제29조(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개정 및 후단신설 2016.2.17.)

제30조(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10.16.)

제31조(행정위탁) 인접한 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처리를 위한 해당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협의를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 근거 조례 삭제로 인하여 시행규칙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거 조례 조문 삭제사항을 반영(안 제11조)
 - 제11조(점용허가 준공)를 삭제함.
 -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함.

4.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17. 3. 10. ~ 3. 30.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우)5012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수도사업소 【fax 940-8409, 이메일:gss1966@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인터넷,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http://www.geochang.go.kr>)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055)940-843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7- |
|----------|-------|

| | |
|-------|------------|
| 제출연월일 | 2017. 3. . |
| 제 출 자 | 수도사업소장 |

1. 제안이유

근거 조례 삭제로 인하여 시행규칙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 조례 조문 삭제사항을 반영(안 제11조)

- 제11조(점용허가 준공)를 삭제함.
-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24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1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3. 10. ~ 3. 30.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 거제시, 남해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 삭제로 인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수도사업소장 장 시 방

관계법령 발췌

□ 하수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88호, 2016.1.27, 일부개정】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제19조(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점용의 목적
3. 점용 기간, 장소 및 면적
4. 공사기간
5. 공공하수도의 복구 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개정 전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2.10.16.)

제2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0.16.)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기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③ 제1항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반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비 등 취하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4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16.)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5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10.16.)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2012.10.16.)

제6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며, 군수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만료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② 공사 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16.)

제8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는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한다.(개정 2012.10.16.)

제9조 삭제< 2015.9.23.>

제10조 (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6.)

② 일시사용신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점용허가 준공) <삭제>

제12조(원인자부담금 고지와 징수방법) ①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허가, 승인시에 완공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그 납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6. 2016.2.17.)

②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0.16.)

제13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0.16.)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2012.10.16.)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가.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0.16.)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 사용량으로 산정하며,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을 산정한다.(개정 2012.10.16.)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4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0.16.)

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개정 2012.10.16.)

제14조(사용량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2.1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③ 오수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도사용자로서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분할한 효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개정 2008. 1. 14. 2012.10.16.)

④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 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⑤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게 한함)으로 한다.

⑥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수량 점검 카드에 따라 조정한다.(개정 2012.10.16.)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16.)

1. 「하수도법」 제22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개정 2012.10.16.)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25조 및 제42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단수 처분된 자(개정 2008. 1. 14. 2012.10.16.)

⑧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12.10.16.)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세대별 인정 조정은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신고에 따른다.(개정 2008. 1. 14. 2012.10.16.)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료를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분 사용료에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 사용기간 = 기초정시간 × {100/100±오차율}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하수도사용료 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 징수한다.(개정 2012.10.16.)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2012.10.16.)

제16조(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이 연체금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 연체금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개정 2012.10.16.)

③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개정 2012.10.16.)

제17조(감면) ① 조례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10.16.)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 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호이동 2015.9.23)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2.10.16. 호이동 2015.9.23.)

② 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개정 및 단서신설2016.2.17.)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2016.2.17.)

④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2.17.)

⑤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 중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가산금은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제18조(이의신청) (개정 2012.10.16.)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개정 2012.10.16.)

제19조(재결 및 통지)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소정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액으로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21조(증명서) (개정 2012.10.16.)

조례 제15조·제17조·제18조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22조(표지)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징수)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다른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② 제 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개정 2012.10.16.)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기존 「거창승강기산업밸리」 보다 포괄적인 의미인 「거창승강기밸리」 용어 사용 및 브랜드를 조례에 반영하여 대내·외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거창승강기밸리조성 및 지원조례」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 「거창승강기밸리」
- 투자유치 승강기산업체 사후관리 기간 완화(안 제15조 4항)
 - 현행7년을 5년으로 축소
-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 규정 완화(안 제16조 2항 6호, 7호)
 - 현행7년을 5년으로 축소

3.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업지원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소: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기업지원과
- 전화: 055-940-3703, 팩스: 055-940-3679, 이메일: djpark2013@korea.kr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붙임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를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 “(거창승강기산업밸리)”를 (거창승강기밸리)로 한다.

제2조(정의) 1호중 “(거창승강기산업밸리)”를 (거창승강기밸리)로 한다.

제15조(투자 이행담보 및 사후관리) ④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의 정산완료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②항 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 또는 임대한 토지를 군수의 정산완료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장 등의 이전일부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정산완료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히 축소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명 거창승강기산업벨리 조성 및 지원조례 | <u>제명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조례</u> |
| 제1조(목적) ----거창승강기산업벨리--- | 제1조(목적) ----- <u>거창승강기벨리</u> ----- |
| 제2조(정의) 1. 거창승강기산업벨리 ----- | 제2조(정의) 1. <u>거창승강기벨리</u> ----- ----- |
| 제15조(투자 이행담보 및 사후관리)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u>제15조(투자 이행담보 및 사후관리)</u> <u>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의 정산완료 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u> |
|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② 생략 1. ~ 5. 생략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 또는 임대한 토지를 7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7. 공장 등의 이전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년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히 축소하는 경우 |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② 생략 1. ~ 5. 생략 <u>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 또는 임대한 토지를 군수의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u> <u>7. 공장 등의 이전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5년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히 축소하는 경우</u>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 6. (생략)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법령 위반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사후관리) ①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이하 "사후관리 기간"이라 한다) 제18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 8. (생략)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④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칙에 정하는 기간이란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융자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을 말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시장·군수가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 8. (생략)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④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칙에 정하는 기간”이란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융자금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군수가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관한 사항
- (1) 사용료의 분할납부 규정 개정(안 제28조)
 -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면제 규정 추가(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3.3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재무과 ☎ 055-940-3262, FAX 055-940-3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4.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거창군청 재무과
(☎ 055-940-3262, FAX 055-940-32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조문 “군수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 제7항 “⑦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⑧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또는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하고 제7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⑦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관·과·소 | | 재무과 |
|-------------|-----------------|----------------------|
| 입 안 자 | 관·과·소장 직위·성명 | 재무과장 신 영 수 |
| | 팀 장 직위·성명 | 재산관리담당 이 수 용 |
|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 민 호 (☎940-3262)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
| <p>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p> <p>② <u>군수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1. <u>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015.12.10.)</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분납(목이동 2015.12.10.)</p> <p style="padding-left: 20px;">나.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목이동 2015.12.10.)</p> <p>2.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u>」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가.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분납</p> <p style="padding-left: 20px;">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분납</p> <p style="padding-left: 20px;">다.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p> <p>③~⑤ 생략</p> | <p>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2 삭제</p> <p>③~⑤ (현행과 같음)</p> | <p>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14조 반영 (사용료의 분할납부 반영)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규정에 맞게 정비</p> |
| <p>제30조(대부료의 감면)</p> <p>①~⑥ 생략</p> <p><신설></p> | <p>제30조(대부료의 감면)</p> <p>①~⑥ (현행과 같음)</p> <p>⑦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p> | <p>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14조 반영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p> |

| | | |
|---|--|--|
| <p>⑦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 <p>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p> <p>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p> <p>4.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⑧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또는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 |
|---|--|--|

도로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함양~밀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관한 사업인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14.

거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착공일로부터 7년

|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 사업예정지(위치) | 사업내용 | 사업시행자의명칭(성명) 및 주소 |
|---------------------|---------------------------------|--|--------------------------|
| 함양~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 밀양시 산외면 가곡리 | L=98.23km (1구간 L=70.83km, 2구간 L=27.40km) |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사 업 명 | 열 람 장 소 | 열람기간 |
|---------------------|-----------------------------|-----------------------------------|
| 함양~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 거창군청 건설과, 남상면사무소, 신원면사무소 | 2017. 3. 14. ~ 2017. 3. 28. |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7. 3. 14. ~ 2017. 3. 28.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밀양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목적 : 본 과업은 1992년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전국 간선 도로망 계획(7x9)의 동서1축과 2축의 간격(70km)이 동서간선도로망 평균간격(30~40km)보다 넓어 이를 보완하는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북부지역 개발촉진, 익산~장수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영호남을 연결하는 산업·관광 동맥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함양~밀양 고속도로를 건설하고자함
3. 사업의 위치 및 범위

| | |
|-------|---|
| 사 업 명 | 함양~밀양 고속도로 건설공사 |
| 개 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장 : L=98.23km(1구간 L=70.83km, 2구간 L=27.40km) •폭 원 : ·1구간 B=23.4m(왕복4차로), B=21.9m(왕복4차로, 설계속도 80km/hr) ·2구간 B=23.4m(왕복4차로), 분리구간 = 11.4~11.7m(편도2차로) •시·종점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가곡리 ·1구간(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유리) ·2구간(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유리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가곡리) |

4.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년
5.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6. 사업개요

1)주요 시설 현황

| 구 분 | 주요시설현황 | | 비 고 | |
|-------|--|---|---|--|
| | 1구간 | 2구간 | | |
| 출입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소 -분기점 2개소 : 북함양, 거창 -나들목 4개소 : 남거창, 합천호, 합천, 의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소 -분기점 1개소 : 창녕분기점 -나들목 2개소 : 영산, 서밀양 | | |
| 휴 게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소(합천호, 창녕휴게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밀양휴게소) | | |
| 터 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개소 / 37,764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소 / 29,870m | | |
| 교 량 | 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개소 / 14,621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개소 / 7,209m | |
| | (장대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개소 / 13,102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소 / 6,675m | |
| | (소교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9개소 / 1,519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소 / 534m | |

2) 주요공사량

| 구 분 | | | 단위 | 수 량 | | | 비 고 |
|-------|------------|-----------|---------|--------------|--------------|------------|-----|
| | | | | 1구간 | 2구간 | 계 | |
| 토 공 | 흙 깎 기 (자연) | 토 사 | m³ | 5,078,583 | 1,251,703 | 6,330,286 | |
| | | 리핑암 | m³ | 1,141,177 | 392,079 | 1,533,256 | |
| | | 발파암 | m³ | 8,587,645 | 4,093,865 | 12,681,510 | |
| | 흙 쌓 기 (다짐) | 노 상 | m³ | 500,445 | 737,517 | 1,237,962 | |
| | | 노 체 | m³ | 10,778,593 | 5,216,004 | 15,994,597 | |
| | | 녹지대 | m³ | 1,065,769 | 512,099 | 1,577,868 | |
| | | 기 타 | m³ | - | 108,943 | 108,943 | |
| | 사 토 | | m³ | 3,266,807 | 296,522 | 3,563,329 | |
| 순 성 토 | | m³ | 335,475 | 759,543 | 1,095,018 | | |
| 배 수 공 | L형 측구 | 형식 1~13 | m | 75,354 | 28,869 | 104,223 | |
| | 횡배수관 | Ø800~1200 | m/개소 | 8,118 / 483 | 3,544 / 127 | 11,662/610 | |
| | 암 거 | 수로암거 | m/개소 | 3,885 / 76 | 1,708.5 / 37 | 5,594/113 | |
| | | 통로암거 | m/개소 | 1,821 / 41 | 754 / 16 | 2,575/57 | |
| 구조물공 | 교 량 | 장대교 | m/개소 | 13,093 / 60 | 6,567 / 17 | 19,660/77 | |
| | | 소교량 | m/개소 | 1,492 / 72 | 517 / 15 | 2,009/87 | |
| | 옹 벽 | 보강토옹벽 | m/개소 | 13,663 / 359 | 2,569 / 66 | 16,232/425 | |
| | | 깎기부옹벽 | m/개소 | 1,595 / 10 | 954 / 5 | 2,549/15 | |
| | | RC옹벽 | m/개소 | 1,285 / 43 | 693 / 18 | 1,978/61 | |
| 터 널 공 | | | m/개소 | 37,589 / 32 | 29,870 / 12 | 67,459/44 | |
| 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 | T=20cm | m² | 25,605 | 2,522 | 28,127 | |
| | | T=28~30cm | m² | 343,900 | 149,448 | 493,348 | |
| | 아스콘포장 | 표층 | a | 2,238 | 321 | 2,559 | |
| | | 중 간 층 | a | 400 | 539 | 939 | |
| | | 기 층 | a | 428 | 140 | 568 | |
| | 교면포장 | 콘크리트계 | a | 2,875 | 1,557 | 4,432 | |
| | | S M A | a | - | 2 | 2 | |
| 부 대 공 | 가 드 휨 스 | | m/개소 | 63,547 / 506 | 20,886 / 140 | 84,433/646 | |
| | 노측용 가드레일 | | m | 64,726 | 32,721 | 97,447 | |
| | 깎기부 점검로 | | m/개소 | 5,860 / 176 | 3,613 / 54 | 9,473/230 | |
| | 방음벽 | | m/개소 | 4,426 / 35 | 10,460 / 51 | 14,886/86 | |

의 견 제 출 서

| | | |
|--------|-----------------------------------|--|
| 사업의 종류 | 고속도로 건설사업 | |
| 사업의 명칭 | 함양~밀양 고속도로 건설공사 | |
| 사업 예정지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경상남도 밀양시 안외면 가곡리 | |
| | | |
| 제출인 | 주 소 | |
| | 성 명 | |

편입용지 총괄 집계표

| 구 분 | 계 | | 국 유 지 | | 공 유 지 | | 사 유 지 | | 비고 |
|-----|-----|------------------------|-------|------------------------|-------|------------------------|-------|------------------------|----|
| | 필지 | / 면 적(m ²) | 필지 | / 면 적(m ²) | 필지 | / 면 적(m ²) | 필지 | / 면 적(m ²) | |
| 계 | 706 | / 598,374.2 | 79 | / 39,660 | 103 | / 22,223.8 | 524 | / 536,490.4 | |
| 전 | 97 | / 44,202 | 6 | / 1,006 | | / | 91 | / 43,196 | |
| 답 | 236 | / 183,719.8 | 2 | / 198 | 20 | / 2,444.2 | 214 | / 181,077.6 | |
| 과수원 | 7 | / 5,849 | | / | | / | 7 | / 5,849 | |
| 목장 | 6 | / 8,092 | | / | | / | 6 | / 8,092 | |
| 임야 | 124 | / 284,458 | 11 | / 8,125 | 2 | / 179 | 111 | / 276,154 | |
| 광천지 | | / | | / | | / | | / | |
| 염전 | | / | | / | | / | | / | |
| 대지 | 22 | / 8,385.0 | | / | | / | 22 | / 8,385 | |
| 공장 | | / | | / | | / | | / | |
| 학교 | | / | | / | | / | | / | |
| 주차장 | | / | | / | | / | | / | |
| 주유소 | | / | | / | | / | | / | |
| 창고 | 1 | / 344.0 | | / | | / | 1 | / 344 | |
| 도로 | 131 | / 25,970.3 | 26 | / 9,000 | 56 | / 10,641.3 | 49 | / 6,329 | |
| 철도 | | / | | / | | / | | / | |
| 제방 | | / | | / | | / | | / | |
| 하천 | 34 | / 13,546.3 | 2 | / 2,745 | 24 | / 8,487.3 | 8 | / 2,314 | |
| 구거 | 44 | / 21,669.8 | 32 | / 18,586 | | / | 12 | / 3,083.8 | |
| 유지 | 1 | / 472 | | / | 1 | / 472 | | / | |
| 양어장 | | / | | / | | / | | / | |
| 수도 | | / | | / | | / | | / | |
| 공원 | | / | | / | | / | | / | |
| 체육 | | / | | / | | / | | / | |
| 유원지 | | / | | / | | / | | / | |
| 종교 | 1 | / 11 | | / | | / | 1 | / 11 | |
| 사적지 | | / | | / | | / | | / | |
| 묘지 | 1 | / 105 | | / | | / | 1 | / 105 | |
| 잡종지 | 1 | / 1,550 | | / | | / | 1 | / 1,550 | |
| 기타 | | / | | / | | / | | / | |

거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소하천구역·지구지정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거창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소하천구역·지구지정 등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소하천구역·지구 등을 지정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3월 14일

거 창 군 수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거창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관내 소하천 195개소

다. 총연장 : 226.82km

라. 기간

○ 계획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17년

마. 계획수립자 : 거창군수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7년 03월 14일 ~ 2017년 04월 07일(25일간)

나. 공람장소

| 구 분 | 장 소 | 구 분 | 장 소 |
|------|--------|-----|--------|
| 거창군청 | 건설과 | 마리면 | 마리면사무소 |
| 거창읍 | 거창읍사무소 | 남상면 | 남상면사무소 |
| 주상면 | 주상면사무소 | 남하면 | 남하면사무소 |
| 웅양면 | 웅양면사무소 | 신원면 | 신원면사무소 |
| 고제면 | 고제면사무소 | 가조면 | 가조면사무소 |
| 북상면 | 북상면사무소 | 가북면 | 가북면사무소 |
| 위천면 | 위천면사무소 | | |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
| 북상면 | 2017년 03월 22일(수요일) 10:00 | 북상면사무소 회의실 | |
| 남하면 | 2017년 03월 22일(수요일) 10:00 | 남하면사무소 회의실 | |
| 마리면 | 2017년 03월 22일(수요일) 14:00 | 마리면사무소 회의실 | |
| 신원면 | 2017년 03월 22일(수요일) 14:00 | 신원면사무소 회의실 | |
| 거창읍 | 2017년 03월 27일(월요일) 10:00 | 거창읍사무소 회의실 | |
| 주상면 | 2017년 03월 29일(수요일) 10:00 | 주상면사무소 회의실 | |
| 위천면 | 2017년 03월 29일(수요일) 14:00 | 위천면사무소 회의실 | |
| 고제면 | 2017년 03월 29일(수요일) 14:00 | 고제면사무소 회의실 | |
| 가조면 | 2017년 03월 30일(목요일) 10:00 | 가조면사무소 회의실 | |
| 가북면 | 2017년 04월 05일(수요일) 10:00 | 가북면사무소 회의실 | |
| 남상면 | 2017년 04월 05일(수요일) 10:00 | 남상면사무소 회의실 | |
| 웅양면 | 2017년 04월 05일(수요일) 14:00 | 웅양면사무소 회의실 | |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람시작일로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017년 03월 14일 ~ 2017년 04월 14일)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서면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055-940-3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조례·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이 재정부분(지방재정법)과 회계부분(지방회계법)으로 분법(2016.11.30.시행) 되어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의 상위 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명칭 변경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로 명칭 변경

4. 입법예고 : 2017. 3. 15. ~ 2017. 4. 4.(20일간)

5. 규 칙 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재무과)
- 전화 : 055-940-3252
- FAX : 055-940-32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규정안 내용 | 의 건 | 비고 |
|--------|-----|----|
| | | |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관·과·소 | | 재무과 |
|-------------|-----------------|----------------------|
| 입 안 자 | 관·과·소장 직위·성명 | 재무과장 신 영 수 |
| | 팀 장 직위·성명 | 세입관리담당 최 주 현 |
| | 담 당 자 성명(전화) | 조 현 정 (☎940-3252)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
|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p> <p>-----</p> <p>-----</p> <p>-----</p> <p>-----</p> <p>-----</p> <p>-----</p> <p>-----</p> <p>-----</p> | <p>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의 상위 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자 함</p> |

거창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조례·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거창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제9조제1항의 규정(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의하여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지방세 환급가산금의 계산)의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은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준용하는 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법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제138조(포상금의 지급)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제9조제3항은 상위근거법령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삭제

- 제2조제1항제1호에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비정규 계약직 포함 :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개정

4. 입법예고 : 2017. 3. 15 . ~ 2017. 4. 4.(20일간)

5. 조 례 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재무과)
- 전화 : 055-940-3252
- FAX : 055-940-32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규정안 내용 | 의 건 | 비고 |
|--------|-----|----|
| | | |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를 “(비정규 계약직 포함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관·과·소 | | 재무과 |
|-------------|-----------------|----------------------|
| 입 안 자 | 관·과·소장 직위·성명 | 재무과장 신 영 수 |
| | 팀 장 직위·성명 | 세입관리담당 최 주 현 |
| | 담 당 자 성명(전화) | 조 현 정 (☎940-3252)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
| <p>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p> <p>2. ~ 4.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9조(환수) ①·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p> | <p>제2조(지급대상) ① ----- ----- -----.</p> <p>1.----- -----<u>(비정규 계약직 포함 :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환수) ①·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 <p>지방공무원법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p> <p>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제9조제3항은 상위근거법령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삭제</p> |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조례·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8.7)과 관련하여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중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신청서식 개정

4. 입법예고 : 2017. 3. 15. ~ 2017. 4. 4.(20일간)

5. 규 칙 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재무과)
- 전화 : 055-940-3252
- FAX : 055-940-32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규정안 내용 | 의 건 | 비고 |
|--------|-----|----|
| | | |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관·과·소 | | 재무과 |
|-------------|-----------------|----------------------|
| 입 안 자 | 관·과·소장 직위·성명 | 재무과장 신 영 수 |
| | 팀 장 직위·성명 | 세입관리담당 최 주 현 |
| | 담 당 자 성명(전화) | 조 현 정 (☎940-3252) |

